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5-1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손대중 의원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실시하여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범위 및 법률지원(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신청 및 비밀준수 등(안 제7조 ~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홍보(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회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채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이하 “상속채무”라 한다)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률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기재	
법률 지원 요청내용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평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일	20 . .	
지원 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				
신청내역				
지원내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과				

관련법령 발췌사항

1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 1. 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22. 12. 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 11.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3. (생략)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 8.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